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54-1996-016806



[집합건물]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79-3 한양빌라5차 제비동 제3층 제30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7년12월5일	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선단리 379-3 한양빌라5차 제비동	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64.43㎡ 2층 164.43㎡ 3층 164.43㎡ 4층 164.43㎡	도면편철장 제457호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1월 31일 전산이기
2		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79-3 한양빌라5차 제비동	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64.43㎡ 2층 164.43㎡ 3층 164.43㎡ 4층 164.43㎡	2003년10월19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4년11월1일 등기 도면편철장 제457호
3		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79-3 한양빌라5차 제비동 [도로명주소] 경기도 포천시 정자동1길 79-6	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64.43㎡ 2층 164.43㎡ 3층 164.43㎡ 4층 164.43㎡	도로명주소 2012년3월23일 등기

[집합건물]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79-3 한양빌라5차 제비동 제3층 제301호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재지번	지목	면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선단리 379-3	대	1231㎡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1월 31일 전산이기
2	1.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79-3	대	1231㎡	2003년10월19일 1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 2004년10월31일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수	건물번호	건물내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7년12월5일	제3층 제301호	철근콘크리트조 49.14㎡	도면편철장 제457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1월 31일 전산이기

(대지권의 표시)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1231분의 51.09	1997년11월12일 대지권 1997년12월5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01월 31일 전산이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소유권이전	1997년12월24일 제43223호	1997년10월15일 매매	소유자 윤재식 660817-***** 포천시 포천읍 선단리 379-3 한양빌라 5차 나동 301호

[집합건물]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79-3 한양빌라5차 제비동 제3층 제301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-1 (전 2-1)	특약			이 재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므로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
				원인 신청착오 접수 1998년1월20일 제1935호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1-1번 등기를 2002년 01월 31일 전산이기
2	1-1번특약 등기말소	2012년3월14일 제9854호	2012년3월9일 해제	
3	소유권이전	2012년3월23일 제11527호	2012년2월29일 매매	공유자 지분 2분의 1 박지운 750209-*****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2055, 303호(선단동, 왕방산빌라) 지분 2분의 1 문희 820628-*****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2055, 303호(선단동, 왕방산빌라) 거래가액 금63,000,000원
4	3번문희지분가압류	2024년9월24일 제37716호	2024년9월24일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의 가압류 결정(2024카단1 432)	청구금액 금9,230,746 원 채권자 삼성카드주식회사 110111-034690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(태평로2가, 삼성본관빌딩 26층 컬렉션지원팀)
5	4번가압류등기말소	2024년10월24일 제41184호	2024년10월21일 해제	
6	3번박지운지분가압류	2024년10월24일 제41288호	2024년10월24일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의 가압류 결정(2024카단1	청구금액 금26,666,616 원 채권자 주식회사케이비국민카드 110111-45465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(내수동, 대우빌딩)

[집합건물]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79-3 한양빌라5차 제비동 제3층 제301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505)	
7	임의경매개시결정	2025년7월29일 제3943437호	2025년7월29일 의정부지방법원 의 임의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327 5)	채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2365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(여의도동) (여신관리지원센터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근저당권설정	1997년12월24일 제43224호	1997년12월24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9,500,000원 채무자 윤재식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379-3 한양빌라 5차 나동 301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111235-00019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-3 (포천지점)
1-1	1번근저당권이전	2006년3월29일 제12366호	2001년11월1일 회사합병	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2365321 서울 중구 남태문로2가 9-1 (포천지점)
2 (전 2)	근저당권설정	1997년12월24일 제43225호	1997년12월24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5,000,000원 채무자 윤재식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379-3 한양빌라 5차 나동 301호 근저당권자 국 관리청 국가보훈처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2번 등기를 2002년 01월 31일 전산이기
3	1번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	2006년3월29일 제12367호	2006년3월28일 해지	
4	2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	2012년3월14일 제9854호	2012년3월9일 해지	

[집합건물]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79-3 한양빌라5차 제비동 제3층 제301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5	근저당권설정	2012년3월23일 제11528호	2012년3월23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45,360,000원 채무자 박지운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2055, 303호(선단동,왕방산빌라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236532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-1 (철원지점)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6년02월26일 14시59분13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54-1996-016806

[집합건물]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79-3 한양빌라5차 제비동 제3층 제301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문희 (공유자)	820628-*****	2분의 1	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2055, 303호(선단동, 왕방산빌라)	3
박지운 (공유자)	750209-*****	2분의 1	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2055, 303호(선단동, 왕방산빌라)	3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6	가압류	2024년10월24일 제41288호	청구금액 금26,666,616 원 채권자 주식회사케이비국민카드	박지운
7	임의경매개시결정	2025년7월29일 제3943437호	채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	문희 등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5	근저당권설정	2012년3월23일 제11528호	채권최고액 금45,360,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	문희 등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